

안산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정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11
----------	------

발의년월일 : 2016. 2. 25.

발 의 자 : 김진희, 김정택, 손관승
신성철, 유화, 윤석진

1. 제안이유

본 조례는 급속한 고령사회로 이행중인 현실에서 경로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사상 또한 쇠퇴하고 있어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효행문화와 경로사상으로 장려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효행장려 사업의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에게 학교 등에서의 효행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 (안 제3조)
- 나. 지원할 수 있는 효행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 (안 제4조)
- 다. 효행사업을 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5조)
- 라.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지정 운영함 (안 제7조)
- 마. 효행 우수자에 대해 표창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관련법령 :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제66조

5. 예산수반사항 : -

안산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 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노인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고취와 효행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시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효를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
2. 효 사상 선양 및 연구 개발사업
3. 경로효친에 관한 재교육사업
4. 효행교육 등 효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사업
5.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원된 비용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효행사업 이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민간단체 등이 해산하는 경우
4.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7조(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제8조(효행 우수자 표창) 시장은 매년 10월 효의 달에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안산시의회
입 안 자	시의원	김정택 의원 발의 (행정 3565)

안산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4. 작성자 :

안산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2811
------------	------

제안년월일 : 2016년 3월 10일
제 안 자 : 문화복지위원장

제안이유

- 조문의 정확한 기관 명칭 사용을 위해 수정하고, 안 제4조의 지원 사업 중 향후 효행장려 지원 사업이 확대되면 더 논의해야 할 사항인 연구개발사업 부분을 삭제함

주요내용

- 안 제3조의 “안산시 교육지원청”을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2호를 삭제함

안산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제1항 중 “안산시교육지원청”을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으로
수정하며, 안 제4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제4호, 제5호를 제2호,
제3호, 제4호로 수정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안산시교육지원청</u> 교육장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효를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u>효 사상 선양 및 연구 개발사업</u></p> <p>3. (생략)</p> <p>4. (생략)</p> <p>5. (생략)</p>	<p>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u> 교육장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효를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1. (원안과 같음)</p> <p><삭제></p> <p>2. (원안 제3호와 같음)</p> <p>3. (원안 제4호와 같음)</p> <p>4. (원안 제5호와 같음)</p>